

붙임

-정관변경(案) 신·구조문대비표 -
제2조(목적) 및 제10조(신주인수권) 일부 변경

변 경 전(현행)	변 경 후	비 고
<p>제2조(목적)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 2.수출입업 3.부동산 임대업 4.기술의 판매 및 임대업 5. 조명 기기 및 장치 관련제품의 제조 및 도, 소매업 6.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p>	<p>제2조(목적)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 (이하 각호 사업 목적 추가) 6.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7. IT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및 용역, 컨설팅, 공급, 판매, 임대, 서비스업 8.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재판매 또는 임대업 9. IT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수출입업 10. IT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해외 라이선스 판매업 11.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사업 12. 사물인터넷(IoT) 등 IT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시스템 사업 13. 정보서비스(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 14. 빅데이터 관련사업 등 정보 처리기술에 관한 전문서비스 15.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16. 인터넷 사업(검색포털, 커뮤니티, 콘텐츠의 구축, 유통) 17. 홈페이지 구축 및 웹호스팅업 18. MCM 콘텐츠 기획, 제작 및 유통업 19. 음반 및 영상사업 20. 종합 이벤트 21. ON-OFF라인 광고물 제작 및 광고, 광고마케팅 대행업 22. 국내외 여행, 숙박, 레저사업 및 알선, 중개업 23. 인터넷, 모바일 예약, 중계 서비스업 24. 관광, 레저, 호텔업 및 관광숙박업 25. 호텔, 리조트 시행사업 26. 회원권 분양업 27. 관광, 레저, 숙박, 식품접객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28. 관광, 레저업종 관련 컨설팅 및 위탁경영사업 29. 관광, 레저, 관광호텔, 관광숙박시설의 경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업 및 부수되는 부대시설 운영업 30. 숙박시설 알선 및 중개업 31. 관광 순항, 유람선 사업 32. 크루즈 사업 33. 외항, 내항, 순항 여객운송사업 34. 선박관리, 대여, 대리점업 35. 해운 및 해운중개업 36. 면세업 37. 식품, 잡화소매업 38. 선내 판매업 39.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4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41. 항공권 및 선표, 승차권 발권 알선, 판매업 42.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43. 핀테크·모바일결제 플랫폼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운영, 서비스업 44. 통신판매업 45. 부가통신사업 46. 전자 상거래 및 온라인 마케팅 47. 전자상거래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자문, 용역, 컨설팅, 공급, 판매, 임대,서 비스업 및 자료처리업 48. 전자지불 결제업 및 대행업</p>	<p>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p>

변 경 전(현행)	변 경 후	비 고
	49. 전자지불시스템 개발, 공급, 자문업 50.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51.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52. 전자화폐 지불결제수단 서비스 사업 및 관리업 53. 전자금융업 54. 전자인증서비스업 55. 전자금융부가통신사업 56. 결제대금 예치업. 57. 신용카드 관련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업무 58. 신용카드 업자 및 신용카드 회원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한 용역, 서비스 제공 59. IC카드 신용카드 승인 조회기 및 관련기기 생산, 판매 임대 유지보수 업무 60. 전산시설 및 공중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생산 처리 가공 유통업무 61. 국내외 부동산 투자, 개발, 운영, 분양 및 자산관리, 분양대행업 62. 주택 및 아파트 시행사업 및 건물관리업 63. 해외 복권사업 64. 인력관리 사업 65. 위 각호와 관련한 투자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66. 위 각호와 관련한 무역(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67.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권을 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 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투자 회사법상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자유치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0조(신주인수권) ①현행과 같음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자본유치를 통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함

변 경 전(현행)	변 경 후	비 고
<p>9. 해외증권 발행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에 결의로 정한다.</p> <p>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 결의로 정한다.</p> <p>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p>		